

2025년도 울산전문경력인사기술지원사업 기술컨설팅 지원기업 모집 공고

2025년도 울산광역시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울산 전문경력인사기술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목적)** 울산 전문경력인사들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식, 인적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현안문제 해결 지원
- **(지원규모)** 총 18백만원
- 지원금 : 1백원 이내/20개사, 기업부담금 없음

지원항목	지원금 한도	지원 횟수	접수형태
기술 컨설팅	최대 1백만원	10회 이내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금은 지원기업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지원 종료 후 수행을 완료한 컨설팅 위원에게 울산TP가 직접 보수를 지급함

- **(지원기간)** 2025. 7. ~ 2024. 10. (4개월)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울산지역 내 소재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의한 중소기업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고경력 퇴직 전문인사 활용 기술컨설팅

분야	지원내용	비고
경영지원	기업 경영 전반적인 애로사항 컨설팅 (노무/인사, 경영전략, 재경·감사, 자재·구매, 수출·영업, 물류·외주 등)	기업당 10회 이내 지원
기술생산혁신	기술지도 및 생산성 향상 컨설팅 (R&D 기술지도, 사업계획 작성방법, 3현 컨설팅, 창조적 학습조직 등)	
에너지환경	에너지·온실가스 진단 및 절감을 통한 환경문제 등 컨설팅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과정, ISO5001 구축지원 등)	
산업안전	안전문화 확산활동 및 현장 사고율 감소 컨설팅 (안전체계 확립, 위험성 평가 대응 지원, 중대재해 등)	
현장품질개선	품질개선을 통해 비용 및 원가 절감 등 지원 컨설팅 (6Sigma기법, Mini-tab프로그램 등 활용)	

4. 신청방법

- **(신청접수)** 신청서 및 제반서류 다운로드 후 E-mail 신청
 - ※ 접수 후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문의처로 직접 문의 요망
- **(접수처)** leegyul649@utp.or.kr, s5643@utp.or.kr

5.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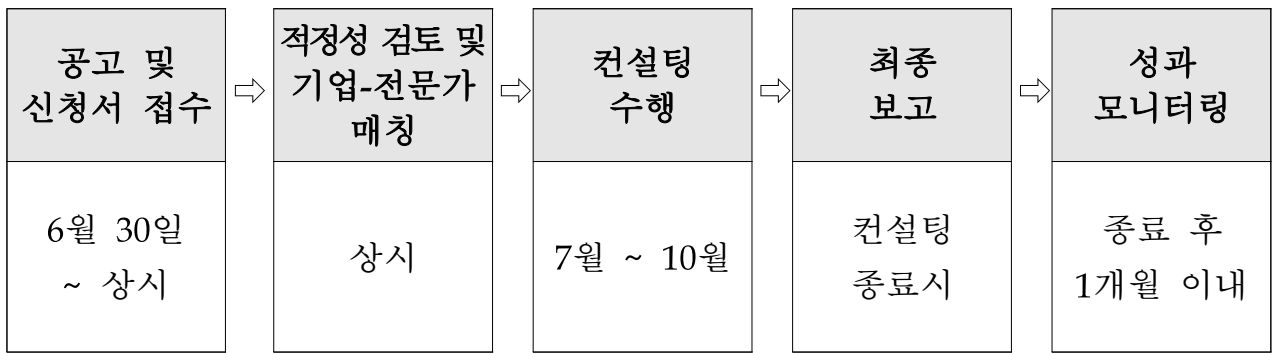
- 컨설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 관련 서식은 울산TP 누리집(www.utp.or.kr)에서 다운로드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정부24, <https://www.gov.kr/>에서 다운로드)

6. 지원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절차

- **(선정방법)**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서면 검토 진행
- **(검토기준)**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적합성, 가능성 참여제한 등 검토

검토지표
울산지역 내 소재 유무 및 규모, 컨설팅 분야 및 내용 적합성, 컨설팅을 통한 성장 가능성

○ (지원절차)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중복인 경우 선정 취소,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8. 추진일정

-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5년 6월 30일(화) ~ 사업비 소진시까지

9. 지원 신청 제외 대상

- 신청 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가동 중이지 않은 중소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중소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련 사업 지침, 규정,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등을 기준으로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지원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 컨설팅 진행 가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

11. 관련 법령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울산테크노파크 수탁사업비관리지침

12. 문의처

- 울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실 이규상 연구원
 - TEL : 052-219-0843 / E-mail : leegyu1649@utp.or.kr
- 울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과학기술진흥실 손형식 팀장
 - TEL : 052-219-0851 / E-mail : s5643@utp.or.kr

- 붙임 1. 기술컨설팅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양식) 1부
- 2.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끝.